【 4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년월일 : 1998. 10. 22.

제 안 자 : 이홍규의원외 2인

□ 제안이유

ㅇ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ㅇ 대법원 97다21253('97. 10. 14)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ㅇ 대법원 98주26('98. 9. 8)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무효확인 판결에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ㅇ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함

□ 주요골자

ㅇ 제증명 수수료중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 참가신청과 수의계약 및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5,000원에서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조례 제 호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등록지정 확인 다음에 "입찰 참가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을 삽입한다.

(별표 1)중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분란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등의 1. 일반행정관계 다음에 "2. 회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내지 제6호를 제3호내지 제7호로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등】			
2. 회계관계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1건	5,000원	
5천만원초과 10억원 이하	1건	7,000원	
10억원 초과	1건	1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 colspan="4">현 행</th><th colspan="4">개 정 안</th></tr>
<tr><td colspan="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td><td colspan="4">제1조(목적) ----------

등록지정 확인, 입찰 참가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td></tr>
<tr><th>구분</th><th>기준</th><th>요액</th><th>비고</th><th>구분</th><th>기준</th><th>요액</th><th>비고</th></tr>
<tr><td>【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1. (생 략)
(신 설)

2. - 6. (생 략)</td><td></td><td></td><td></td><td>【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1. (현행과 같음)
2. 회계관계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 - 7. (현행과 같음)</td><td>

1건
1건
1건</td><td>

5,000원
7,000원
10,000원</td><td></td></tr>
</table>

·徵收할 수 있다.

第127條 (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28條 (手數料)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法令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9條 (分擔金)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産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住民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1條 (使用料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平한 방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②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

③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를 決定·통보하여야 한다,

⑤異議를 申請한 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4項의 期間내에 決定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期間이 종료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또는 그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관할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1971. 1. 15]
[조례 제 218 호]

개정	1975.12.29 조례 제 438호	개정	1985. 4. 9 조례 제1027호
〃	1976. 4.22 조례 제 455호	〃	1985. 5.29 조례 제1031호
〃	1976. 5.10 조례 제 459호	〃	1987. 1.23 조례 제1137호
〃	1979. 5.31 조례 제 635호	〃	1989. 2. 2 조례 제1245호
〃	1979. 9.19 조례 제 642호	〃	1989. 2.16 조례 제1247호
〃	1980. 7.15 조례 제 710호	〃	1989. 3.10 조례 제1251호
〃	1980.10.21 조례 제 719호	〃	1989. 4.21 조례 제1262호
〃	1980.11.26 조례 제 722호	〃	1989. 4.28 조례 제1264호
〃	1982. 4.17 조례 제 826호	〃	1989. 7.12 조례 제1287호
〃	1982. 7.30 조례 제 848호	〃	1990. 2.14 조례 제1318호
〃	1983. 1. 5 조례 제 878호	〃	1990.11. 6 조례 제1335호
〃	1983. 9.28 조례 제 911호	〃	1991. 1.12 조례 제1346호
〃	1983.12. 1 조례 제 914호	〃	1992.12.22 조례 제1444호
〃	1984. 2. 1 조례 제 949호	〃	1994. 6.22 조례 제1495호
〃	1984.10.29 조례 제1002호	〃	1996. 1.11 조례 제1551호
〃	1985. 2. 6 조례 제1020호	〃	1997. 7. 7 조례 제1627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3 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제 3 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경기도 광고물 등 관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 5 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양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 6 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읍·면 대장등의 공부열람료
4. 리·반장의 공부열람료

제 8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 15 조례 제 21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요 율 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500원	일제신고등은 제외
2) 인감의 개인신고	1건	400원	
2. 신상에 관한 증명			
• 부양사실확인원	1통	35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750원	
2) 분배농지 상환 완료	1통	800원	
3) 공장등록 증명	1통	750원	
4) 시설보유증명	1통	2,000원	
5) (식품, 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1통	1,400원	
6)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	1통	1,4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시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1통	8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 문서			지적관계 제외
• 토지도면	1통	500원	
• 건물도면	1통	500원	
3)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 기본료	시간당	45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 지정의 대장 열람	1건	45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800원	
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	1필지	800원	
4)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800원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800원	
6)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2,000원	
7)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800원	
8) 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8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통	500원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1통	5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통	500원	
4) 징수유예 증명	1통	2,0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 공급 실적)증명	1통	1,0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1,000원	
3) 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0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1,000원	
8. 자동차에 관한 증명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9.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1,000원	
2)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4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	1통	300원	
2)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800원	
11.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			('94.6.22신설)
1)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1매	100원	
2)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	1시간	200원	
	초과10분당	100원	
12.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등에 관한 사항			
1) 필름의 인화	1매	200원	실비(재료비)별도부담
2) 녹음테이프의 복사	1건	300원	〃
3) 녹음테이프의 청취	10분당	200원	
4) 녹화테이프의 복사	1건	300원	실비(재료비)별도부담
5) 녹음테이프의 영상관람	10분당	200원	
6) 컴퓨터 입력자료 인쇄	1매	100원	
7) 컴퓨터 입력자료 관람	1건	200원	
8)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사항에 의한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5,500원 계속1,500원	
2) 토지가격확인원	1건	800원	
3) 토지등급 설정 심사청구 신청	1건	4,000원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농수산부 관계			
1) 축사 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	1건	3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2,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	1건	2,300원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1건	4,500원	
2)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점용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1건	300원	
3) 하천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원	
4)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5/1,000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4,500원	
6)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4,600원	
7)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	척당	3,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 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3,8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 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4,0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4,200원	
8)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1건	3,000원	
9)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1건	2,500원	
10) 공(시)영주택(증, 개축) 승인신청	1건	2,500원	